

위험관리기법

강원희
(보험연수원 전임강사)

<전화에서 계속>

④ 동산과 부속설비의 구분이 애매한 물건의 평가

집기인지 부속설비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예컨대 다방의 음악설비, 극장의 부착관람석)가 있으므로 건물소유자와 집기소유자가 다를 때에는 보험금의 이중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과 동산의 소유자 및 각 보험회사 상호간에 미리 협의하여 소유권의 구분을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⑤ 영업용 집기비품의 평가

여관, 극장, 영화관 등 고객을 대상으로 한 집기류의 손해액은 피보험자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여관, 호텔, 식당 등에서 고객을 위해 사용하는 「세트」로 되어 있는 고가의 식기류, 고급백화점의 확실적인 진열 「케이스」 및 극장의 관람석 등이 이러한 종류의 집기에 속한다.

⑥ 건물의 부속설비를 임차인이 설치한 경우의 평가

건물의 종물이나 부속설비로서 임차인이 설치한 것은 특약이 없는 한 건물주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



지 않으므로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이 때의 보험의 목적은 「시설」이라고 호칭하도록 손보험계에서 정한 바 있다.

다시 말하면 임차인이 부착하거나 설치한 물건이 건물에 흡수되지 않고 독립된 존재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부속설비로서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예컨대 임차인이 벽칠을 새로 했거나 지붕을 다시 이었거나 임차인이 부가한 벽재료와 개와는 건물의 소유권에 흡수되므로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건물에 흡수되지 않는 경우에만 시설로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마) 통화, 유가증권, 귀금속, 미술 골동품 등 약관상의 명기물건을 계약할 경우

이와 같은 동산은 화재보험에서는 약관상 명기물건이고 통상의 취급에서는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하는 사례가 많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국가 또는 사회의 신용에 의하여 가치가 부여되고 있으며(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둘째, 소량으로 거래의 가치가 있고(귀금속, 보옥, 보석 등)

셋째, 주로 주관적 가치를 지니거나(고본, 설계서, 도안, 본, 주형,

목형 등)

넷째, 시장가격은 있으나 한정된 시장가격으로서 대체성이 없는 고가품(서화, 골동품, 미술품 등)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가 어렵고 손해액의 사정도 곤란하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분쟁을 방지하는 현명한 방안일 것이다.

첫째, 품목, 규격, 수량, 단가를 기재한 일람표(목록)를 만들어 내고, 가능하면 사진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가급적이면 기평가보험(Valued Policy)의 형식을 밟는 것이 좋다. 또 고분, 설계서, 도안, 지형, 모형 등에 대해서는 평균단가를 미리 정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셋째, 수용장소를 정해두고 가입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다. 즉 귀금속, 통화, 유가증권 등은 금고 내 또는 금고실내로 한정하거나 설계서, 도안, 분 등에 대해서는 특정한 「케이스」내에 수용하는 것임을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보험가입시에는 반드시 보험회사 직원에게 확인을 하도록 한다. 특히 고가품, 미술품동품에 대해서는 보험사고 발생시 진품여부 등을 놓고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모사도(模寫圖)를 그려 놓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 부보시에 자기의 미술품동품 등의 개개 품목, 가격 등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경우에는 품목,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한 목록을 밀봉(密封)하고 여기에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가 날인하여 신용있는 제삼자에게

맡겨두고 이재시 이를 개봉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밖에도 시계상의 대부분이 귀금속, 보옥, 보석, 미술품 등을 동시에 취급하고 있으므로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사후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보험가입금액을 종류별로 명시해 두어야 한다.

(8) 채권, 책임, 영업수익 등에 대한 보험계약

현행의 화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피보험이익으로 삼고 있다. 이 밖에도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배상책임보험), 화재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채권(채권보전계약) 또는 영업이익(기업휴지 손해를 담보하는 계약)에 대해서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가운데서 전당포에 대한 화재보험계약과 수탁물에 관한 화재보험계약을 알아보기로 한다.

(가) 전당포의 화재보험계약

이 계약의 피보험이익은 계약의 인수방법에 따라 채권보전계약의 일종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계약이 될 수도 있다. 후자의 계약 즉 보험계약자는 전당포주(典當舖主), 피보험자는 전당물주(典當物主)로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이익의 내용은 전당포주의 소유권이므로 여기서 다룰 필요도 없이 재물보험분야에서 통상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즉 전당포주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전물(典物)을 보관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374조), 또한 전당포영업법 제22조 제3항에는 「전당포주의 책임에 기인한 사유로 인하여 전물이 멸실되거나 훼손 또는 도난을 당한 경우에

있어서의 전당물주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당물주의 과실로 전당물이 이재될 입은 경우에는 전당물주에 대하여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민법 제390조). 이상의 법규정을 보더라도 전당포주는 전당물에 대해서 피보험이익이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보험이익중 배상책임보험부분(배상책임보험일 경우는 수탁물특별약관으로 인수)을 제외하고 화재보험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면 예치품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고 그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며 소유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청구권에 질권을 설정시켜 그 보험금 중에서 채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전당포의 경우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그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질권 설정절차를 밟게 한다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전당포영업법 제22조 제2항에 「화재, 기타 전당포주 및 전당물주의 쌍방의 책임이 될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전당포주가 전당물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전당포주는 그 전당물로 담보된 채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률적 근거로 본다면 전당포주는 채권을 상실하므로 전당물주에게 지급된 보험금에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변제받을 수는 없으며 한편 전당물주도 전당물의 이재로 채무가 면제되므로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그것은 보편으로서 오히려 이득을 얻게 되어 공서양속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가능한 방법으로는 첫째, 피보험자를 전당포주 자신으로 하고

둘째, 보험의 목적은 전당물에 따라 담보되는 채권으로 하며

셋째, 보험가입금액은 상기 채권액(이자 포함)까지로 하되 전당물가액을 한도로 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보관전당물의 가액이 6천만원이고 전당물로 담보되고 있는 채권액이 4천만원이라면 보험가입금액은 4천만원까지가 된다. 이 때에 유전물(流典物)은 그 사실을 명기하여 전당물과 별개항목, 별도의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여야 하며 또한 이 유전물은 전당물주 자신의 소유물이므로 전물과 달리 통상방법으로 부보가 가능함은 물론이다.

이상과 같이 전당포의 보험계약의 목적은 화재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될 때 대부액과 그 미수이자(어느 것도 채권)가 되고 이재시의 보험가액은 그때의 총 대부액에 미수이자총액을 가산한 것이 된다. 이 보험가액을 실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당포에 비치되어 있는「전물대장」의 최종기록번호와 기타「보조장」을 보고 개개의 대부액을 확인하여 집계하지만 이 가운데에는 유전기간이 지나서 물품의 소유권이 전당포에 이전된 것(유전물)도 있으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 또한 장부나 기타 기록이 소실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기억에 의존하는 방법 외에 관해경찰서에서 영업상태를 청취하거나 납부한 세금을 역산으로 추정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장부 등을 대화금고 등에 보관해 두는 것이 화재시를 대비한 소망스러운 조치라고 하겠다.

이재로 인하여 전당포가 입는 손해

는 상술한 바와 같이 대부금이라는 채권액이나 화재로 전당포가 입는 손해정도와 채권이 받는 손해액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즉 1개의 전당물이 전소한 때에는 그 채권액도 전액손실이 되나 전물이 분손이 될 때에는 채권액의 손실은 반드시 「물건」의 분손정도에 비례한 채권액의 손실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실제의 전당물거래에 있어서는 전당물 손해정도 이상으로 채권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채권액의 손해측정이 곤란하고 또 분쟁도 야기되기 쉬운 원인이 되므로 보험가입이나 계약인수시 미리 협정하든가 또는 특별한 양해사항으로 정해 두는 것이 적당하다.

(나) 운송업자, 창고업자, 수탁가공업자 및 판매업자 등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의 보험계약

이들 업자가 타인으로부터 특정물품을 예수, 보관하거나 가공판매중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하면서 관리하는 의무가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수탁물을 보관하는데 있어서 선의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그 멸실·훼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책임이 발생해 위험을 대상으로 하여 화재보험계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 화재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채권 또는
영업이익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가운데 창고업자는 특약형식으로 기탁화주(피보험자)를 위한 계약을 하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배상책임은 피보험이익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 할부판매물품의 보험계약

할부판매물품은 판매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목적물의 점유가 매도자로부터 매입자에게로 이전되는 매매계약으로서 이것을 소유권유보물건(所有權留保物件)이라 한다. 이와 같은 매매에 있어서는 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도자가 유보하는 담보방법이다. 근래에 들어 자동차,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난방기, 기타 각종 전기·전자제품 등 동산의 매매에서 이러한 소유권유보계약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소유권유보방식의 매매에서 판매된 동산의 화재보험에 있어서는 통상의 실무상 취급은 다음과 같다. 보험계약자는 매도자가 되거나 매입자가 되거나 관계없으나 소유자로서의 피보험이익은 매도자에게 있으므로 피보험자를 매도자로 하는 화재보험이외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창약서의 피보험자란에 그 사실을 명기하고 보험가입금액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매매가액(매매대금채권과 매매가액은 통상 동일)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법이 채택되고 있다. 물론 이재가 발생한 경우의 보험금은 매도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매도자가 수령한 보험금이 미불잔대금채권(未拂殘代金債權), 이자, 지체손실금 등의 합계를 초과한 경우에는 매도자는 그 초과분을 매입자에게 반환하게 된다.☉